

## 24. 1. 9. 본회의 의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등 주요내용

### I 선거관리위원회법

####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(§ 12①)

현행	개정
▶ 비상임위원은 일당·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	▶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</u>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·연구,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<u>매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</u>

※ 공포한 날부터 시행

### II 위탁선거법

#### 1 위탁선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

구분	현행	개정안
예비 후보자	등록대상 선거 (§24의2①)	·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
	등록시점 (§24의2①)	· 중앙회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
	선거운동 주체 (§24의2⑦)	· 예비후보자
	선거운동 방법	· 전화·문자메시지 · 위탁단체 홈페이지
		· 현행 선거 ·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· 중앙회장선거·조합장선거·이사장 선거 모두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· 예비후보자 · 예비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 (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·회원 중 1인 지정) · 현행 선거운동 방법 ·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

구 분		현 행	개정안
	(§24의2⑦)	· 명함배부·지지호소 (위탁단체가 사전 공개한 행사장 한정)	행사에서의 정책 발표
후보자	선거운동 주체 (§24①)	· 후보자	· 후보자 ·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(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·회원 중 1인 지정)
	선거운동 방법 (§25~ §30의2, §30의4 신설)	· 선거공보(§25), 선거벽보(§26) · 어깨띠·윗옷 착용, 소품 이용(§27) · 전화·문자메시지(§28) · 위탁단체 홈페이지(§29) · 명함배부·지지호소(§30) · 선거일 후보자소개 및 소견발표(§30의2) (총회 또는 대의원회 선출 한정)	· 현행 선거운동 방법 ·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고한 공개 행사에서의 정책 발표
활동 보조인	선임주체 (§24의3① 신설)	-	· 장애인 예비후보자·후보자
	자격제한 (§24의3① 신설)	-	·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·회원 중 1명
선거 벽보	첨부장소 확대 (§26②)	·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	·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 추가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(§29①)		· 위탁단체 홈페이지 · 전자우편(소셜미디어 포함)	· 인터넷 · 전자우편(소셜미디어 포함)
휴대전화 가상번호 (§30의3 신설)	제공목적	-	· 선거운동 활용 목적
	요청· 제공 절차	-	· 위탁단체→관할위원회→이동통신 사업자→관할위원회→위탁단체

## 2 위탁선거 절차사무 개선

구 분	현 행	개정안
위탁선거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위원회 의견조치 의무화 (§24의2② 신설)	-	·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에 관한 법령 제·개정 또는 폐지 시 미리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듣도록함

구 분	현 행	개정안
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요청근거 신설 (§18④ 신설)	·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 범죄경력 일괄조회	·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· 관할위원회는 제출된 범죄경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회
투표소개표소 설치 협조의무 (§40③, §46④, §68② 1의2. 신설)	-	· 관할위원회로부터 투·개표소 설치 장소 협조요구 받은 공공기관·단체장· 위탁단체의 협조의무 규정
포상금 반환규정 신설 (§76②~⑥ 신설)	-	·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 상금을 반환
질병·부상·사망에 대한 보상제도 신설 (§79 신설)	-	·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·부상· 사망 시 보상금 지급

※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3조 기부행위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